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5. 1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6. 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가. 제안이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사무를 보건소장에 위임하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
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및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임사무의 신설 및 추가 (수임기관: 보건소장)
 -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
지위 승계 관련 사무 추가

-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
- 위임사무의 삭제 (수임기관: 구의회 사무국장)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권자 범위 확대로 구의회 사무국장 위임 사무 삭제
-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 추가 (수임기관: 보건소장)
 -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휴업, 재개 신고 수리에 관한 근거조항 추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 사무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폐업, 휴업, 재개신고 수리에 관한 근거조항 추가: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오류 수정 (수임기관: 보건소장)
 -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 사무
 - 허가, 신고 등의 갱신 (「의료기기법」 제29조) →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국 및 부서 명칭 변경 (2022. 10. 7.)
 - 행정관리국(총무과) →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 기획재정국 → 재정관리국
 - 복지교육국(노인장애인과) → 복지동행국(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 관광일자리국(지역경제과) → 관광경제국(경제진흥과)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
-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2023. 4. 13. ~ 5. 3.(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사무를 보건소장에 위임하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및 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위임사무의 신설 및 추가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 지위 승계 관련 사무 추가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사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임.
- 또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약국에 관한 사무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휴업·재개 신고 수리에 관한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약사법」 제44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사무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 승계, 폐업, 휴업, 재개신고 수리에 관한 근거조항 추가하는 내용임.
-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오류를 수정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제29조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허가, 신고 등의 갱신하는 내용임.
 - 2022년 10월 7일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관리국(총무과) →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기획재정국 → 재정관리국, 복지교육국(노인장애인과) → 복지동행국(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관광일자리국(지역경제과) → 관광경제국(경제진흥과)로 변경하는 내용임.
 - 또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30조제2항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권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권자가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 위임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에 따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마약유통이 대한민국 전국에 전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소장은 관할 지역 내 위험성이 있는 흥대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을 함으로써 불행질 수 있다’는 마약근절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마약류 유통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약사법」

제44조의 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 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고, 신고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면허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약국개설등록대장과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각각 적어 넣은 후 약국개설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신고 내용을 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③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8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대장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각각 적어 넣은 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재발급하고, 해당 등록증을 재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법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4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그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허가증·인증서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경우
 - 가. 제조업·수입업 허가증: 제조업소 또는 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나. 제조·수입 허가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다. 제조·수입 인증서 및 제조·수입 신고증: 정보원의 장
2. 삭제
3. 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 임대업자의 경우: 수리업소·판매업소·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